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원의 문항 출제, 컨설팅 등 교습행위 제한 근거 신설〉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20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교원의 문항 출제, 컨설팅 등 교습행위 제한 근거 신설	2
2. 안 제4조제4항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성훈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5. 12.
3. 회부연월일 : 2026. 5.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법 위반 시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제되면서 사교육 시장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수능 및 각종 평가와 관련된 시험 문항이 금전적 대가를 통해 사적으로 유통되는 경우 특정 학원 또는 강사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입시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원의 학원 교재 등 교습자료의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 등 교습행위 금지를 명확히 하고,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등이 이를 요구·의뢰·교사 또는 협력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등록말소 또는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및 제17조).

Ⅲ. 검토의견

1. 교원의 문항 출제, 컨설팅 등 교습행위 제한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교원에게 과외교습 뿐만 아니라, 학원 등의 학습자를 위한 교습자료의 문항 출제, 컨설팅 등 교습행위를 제한하고, 학원 설립·운영자는 해당 행위를 교원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은 <u>과외교습</u>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 ----- -----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u> -----.
<신설> <신설>	1. <u>과외교습</u> 2. <u>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등의 학습자를 위한 교습자료의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 컨설팅 등 교습행위</u>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 ③ (생략) <신설>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학원설립·운영자(강사를 포함한다),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제3조에 따른 교원에게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구·의뢰·교사하거나 그 행위에 협력하여서는 아니 된다.</u>

나. 검토의견

□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3조¹⁾는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공교육 체계 내에서 공정한 교육을 도모하고, 교원들의 과외교습을 통한 시험 문제 유출 등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 이러한 학원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명 사교육 강사 등이 현직 교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 문항을 매수하는 사례²⁾가 발생하고 있음.

- 참고로, 감사원의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2025.2.)결과, 현직 교원들이 사교육업체 및 학원강사에게 문항을 제작·공급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되어 교원·학원 관계자 등 56명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였음. 이후 경찰의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통해 유명 사교육 강사와 현직 교사 간 문항 거래 사례 등이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기소되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³⁾중임.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혜린, “현직 교사에 최대 1.8억 줬다... 수능 문항 거래 실체”, 서울경제, 2026.1.14.

3) 이 중 유명 사교육 강사 등이 현직 교사들로부터 수능 대비 문항을 제공받고 금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8. 26. 해당 금품이 문항 거래에 따른 정당한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음.

□ 이에 개정안은 교원이 과외교습 뿐만 아니라 학교교과교습학원의 학습자를 위한 교습자료의 문항 출제, 컨설팅 등 교습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학원설립·운영자에게 해당 행위를 교원에게 요구·의뢰하거나 협력하여서는 안된다는 책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교육 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교원은 학원법 제3조에 따른 과외교습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22조제2항4)에 따라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 등에 문항을 판매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행위는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문항제작·판매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금지·처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교원이 사교육업체 등에 제공한 문항 또는 이와 유사한 문항을 이후 자신이 출제하는 학교의 내신시험 등에 다시 활용하는 경우, 해당 문항을 사전에 접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학교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교원의 사교육업체 대상 문항 제작·제공 행위는 단순한 영리활동의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조를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를 넘어 공정성 측면에서도 규율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교원의 학원 교습자료를 위한 문항 제작 등의 행위를 학원법 제3조에 따른 제한행위로 명시함으로써,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상 처벌의 공백을 보완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교원의 사교육업체 대상 문항 제작·판매 행위는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문항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 한편, 학원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그 수범자가 학원 설립·운영자, 강사 등인 점, 교원의 영리활동 및 겸직 금지 등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⁵⁾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교육공무원법」 등에 이를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음.

5) 「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로 겸직금지 및 영리활동 제한 등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현행 학원법 제3조에서 이미 교원의 과외교습을 직접 제한하고 있고,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행위의 범위를 문항 출제 등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학원법에 관련 규정을 두는 것도 법체계상 가능할 것으로 보임.

특히 현재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면·해임 등을 포함한 징계처분⁶⁾이 가능하나, 이는 교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제재로서 형사처벌과는 그 성격이 다름.

□ 다만, 개정안은 금지행위를 ‘교습자료의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 컨설팅 등 교습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컨설팅’ 및 ‘등 교습행위’에 어떠한 행위가 포함되는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문항 출제 외에 교습자료 제작과 관련된 자문·검토 등 다양한 활동이 금지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음.

특히 안 제3조를 위반한 교원은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상 수범자가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그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제재의 체계 측면에서 개정안은 금지행위를 한 교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관여한 강사의 자격 제한에 대

6)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안) (교육부, 2023.12.)

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참고로, 김용태 의원안(의안번호 제2219402호)은 문항 거래 등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학원 강사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사교육 시장의 질서를 왜곡하고 입시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교원의 학원 교재 제작·문항 출제 등을 제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관련 내용을 「교육공무원법」 등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중검토 의견임.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교원의 금지행위를 ‘교습자료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 컨설팅 등 교습행위’로 확대할 경우 단순한 교육과정 자문, 교재 감수 및 학습자료 검토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임.

2. 안 제4조제4항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안 제4조제4항의 책무를 위반하는 경우, 학원(교습소, 개인 과외교습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처분) ①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설></u>	<u>6의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3조에 따른 교원에게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구·의뢰·교사하거나 그 행위에 협력한 경우</u>
<u>6의2.</u> (생략)	<u>6의3.</u> (현행 제6호의2와 같음)
7. ~ 12. (생략)	7. ~ 12.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u>제1호의2</u> 에 해당하는 경	② ----- ----- ----- ----- ----- ----. --- <u>제1호의3</u> -----

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 설> 1. 1의2. (생략) 2. ~ 7. (생략)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 설> 1. 1의2. (생략) 2. ~ 6. (생략) ④ (생략)	----- -----. 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3조에 따른 교원에게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구·의뢰·교사하거나 그 행위에 협력한 경우 1의2. 1의3. (현행 제1호 및 제1호의2와 같음) 2. ~ 7. (현행과 같음) ③ ----- ----- ----- -----, -----제1호의3----- -----. 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3조에 따른 교원에게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구·의뢰·교사하거나 그 행위에 협력한 경우 1의2. 1의3. (현행 제1호 및 제1호의2와 같음) 2. ~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안 제4조제4항은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이동법 제3조에 따른 행위를 요구·의뢰·교사하거나 협력하여서는 안 된다는 책무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책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학원법은 교습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로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규정하는데, 각 주체별로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모든 교습 주체에 대하여 동일한 행위규범과 제재처분을 적용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한편,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김문수 의원안 및 조정훈 의원안은 문항 거래 등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학원설립·운영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도 학원설립·운영자가 소속 강사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까지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관련 개정안과 같이 일정한 면책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관계기관 의견으로, 교육부는 학원 설립·운영자의 책무 이행의 실효

성을 제고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나,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학원운영자에게 권고수준이 아닌 등록말소라는 제재를 명시화하여 지나친 규제로 볼 수 있어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93